

	실병관리청	보	도 침	; 고	사 료			
배 포 일	2020. 12. 11.	. (총 25매)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홍 정	익	전	화	043-719-9370			
담 당 자	진 여 원,	최 은 경	] 전 	<del>-</del> ∠L	043-719-936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11일)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0,786명(해외유입 4,84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20명으로 총 31,157명(76.3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0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9명이며,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2명(치명률 1.40%)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ᄹ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73	250	26	6	37	3	8	47	0	225	11	20	9	7	4	3	12	5
누계	35,944*	10,852	1,043	7,185	1,595	690	551	341	101	8,175	713	436	949	421	412	1,703	698	79

<sup>\*</sup> 지자체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 0시 기준 인천 -1, 충북 +1, 경기 +1 / 12.10. 0시 기준 울산 -1, 서울 -1, 경북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추정)유	·입국가 <sup>*</sup>	확인	단계	국적			
구분	합계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6	0	5	3	4	4	0	7	9	5	11
누계	4.842	30	2,307**	881	1,460	146	18	2,247	2,595**	2,632	2,210**
	4,042	(0.6%)	(47.6%)	(18.2%)	(30.2%)	(3.0%)	(0.4%)	(46.4%)	(53.6%)	(54.4%)	(45.6%)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2명), 러시아 1명(1명), 유럽 : 우크라이나 2명(2명), 영국 1명, 아메리카 :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10.(목) 0시 기준	30,637	8,896 <sup>1</sup>	172	564
12.11.(금) 0시 기준	31,157	9,057	169	572
변동	(+)520	(+)161	(-)3	(+)8

12월 10일 0시부터 12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미국 4명(3명),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2명(2명), 말라위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역학조사 누계 변동:12.10. 0시 기준 국내발생(경북) 1명이 해외유입으로 변경(유입국가 아시아 +1/확인 단계 지역사회+1/국적 외국인+1)

<sup>\*\*</sup>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sup>&</sup>lt;sup>1</sup> 지자체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 0시 기준 인천 -1, 충북 +1, 경기 +1 / 12.10. 0시 기준 울산 -1, 서울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12월 11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은평구 소재 역사와 관련하여 12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 (구분) 직원 10명(지표환자 포함)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6명이다.

구분	계	<b>음식점 관련</b> (지표포함)	가족	지인	동료	기타
전일	204	135	40	11	5	13
금일	216(+12)	140(+5)	44(+4)	13(+2)	5	14(+1)

- 경기 수원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환자 포함, +2), 입소자 10명, 가족 및 지인 10명(+5)
- 경기 안양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구분	계	교인	가족	지인	동료
경기안양시종교시설 관련	27	22	5	-	-
대전종교관련모임 관련	13	1	7	4	1

\* **(추정감염경로)** 안양종교시설 → 대전종교모임 → 김장모임









○ 경기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구분	계	직원	환자	가족	방문자	지인
12.6일	30	14	1	13	1	1
금일	40(+10)	17(+3)	1	16(+3)	5(+4)	1

- \* (지역) 경기도 31명(+8). 인천 8명(+2). 서울 1명
- 경기 군포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12월 8일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중 26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sup>\*</sup>이다.
  - \* (**구분**) 이용자 18명, 종사자 7명, 가족 1명
- 인천 부평구 일가족/증권회사와 관련하여 12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감염원 및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인천 부평구 가족관련	경기 부천시	증권회사 관련	서산 일가족 김장모임		
구분	계	<b>가족</b> (지표환자 포함)	동료	가족	가족		
금일	27	7	14	1	5		

- 강원 강릉시 기타 강습과 관련하여 12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 (구분) 지표환자(강사), 기타 강습생 5명, 지인 1명, 기타 4명
  - \* (추정위험요인) 기타 강습 시 마스크 착용 미흡









- **울산 남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2차 전수검사에서 4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7명\*이다.
  - \* (구분) 요양보호사 18명(지표환자 포함, +2), 종사자 14명(+5), 환자 109명(+38), 기타 16명(+2)
- 경남 창원시 식당과 관련하여 11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6명,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 (구분) 식당 방문자 5명(지표환자 포함), 운영자 1명, 가족 4명
- 경남 창원시 음악동호회와 관련하여 12월 5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 (구분) 학원 5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2명, 기타 4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5.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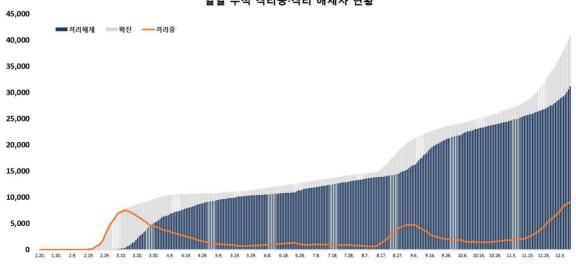
# 일일 확진자 현황 (12.11. 0시 기준, 40,786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sup>**</sup>		결과 역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T E	5 AI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급시 중	크피 급 8				
	3,277,948 <sup>1</sup>	40,097 <sup>1</sup>	30,637	8,896 <sup>1</sup>	564	72,764	3,165,087 <sup>1</sup>				
12.11.(금) 0시 기준	3,311,213	40,786	31,157	9,057	572	77,688	3,192,739				
변동	+33,265	+689	+520	+161	+8	+4,924	+27,652				

- \* 12월 10일 0시부터 12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1 지자체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 0시 기준 인천 -1, 충북 +1, 경기 +1 / 12.10. 0시 기준 울산 -1, 서울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11. 0시 기준, 40,78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	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17	국내발생	해외유입	764141	(70)	발생률 <sup>*</sup>							
서울	250	2	11,426	(28.01)	117.39							
부산	26	0	1,119	(2.74)	32.80							
대구	6	0	7,286	(17.86)	299.04							
인천	37	0	1,737	(4.26)	58.76							
광주	3	0	776	(1.90)	53.27							
대전	8	2	592	(1.45)	40.16							
울산	47	0	398	(0.98)	34.70							
세종	0	0	123	(0.30)	35.93							
경기	225	4	9,134	(22.39)	68.93							
강원	11	0	753	(1.85)	48.88							
충북	20	0	498	(1.22)	31.14							
충남	9	1	1,044	(2.56)	49.19							
전북	7	0	483	(1.18)	26.58							
전남	4	0	465	(1.14)	24.94							
경북	3	0	1,797	(4.41)	67.49							
경남	12	0	801	(1.96)	23.83							
제주	5	0	107	(0.26)	15.95							
검역	0	7	2,247	(5.51)	-							
총합계	673	16	40,786 <sup>1</sup>	(100)	78.67							

<sup>\*</sup>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검 역
			12	1	12	Т	22	12	0	71		7	-	7	-	7	-	Т	
격리 중	9,057	3,889	344	65	375	103	103	193	20	2,076	189	217	226	192	108	106	223	32	596
격리해제	·	7,431		7,021	•		483	201		6,925		278	808	289	353	1,634		75	1,650
사망	572	106	18	200	12	3	6	4	0	133	11	3	10	2	4	57	2	0	1
합 계	40,786 <sup>1</sup>	11,426	1,119	7,286	1,737	776	592	398	123	9,134	753	498	1,044	483	465	1,797	801	107	2,247

<sup>\* 12</sup>월 9일 0시부터 12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sup>※</sup>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sup>\*\*</sup>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sup>&</sup>lt;sup>1</sup> 지자체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 0시 기준 인천 -1, 충북 +1, 경기 +1 / 12.10. 0시 기준 울산 -1, 서울 -1)

¹ 지자체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 0시 기준 인천 -1, 충북 +1, 경기 +1 / 12.10. 0시 기준 울산 -1, 서울 -1)



###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명, 확진(보고)일 기준) ■서울 ■인천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200 서울지역 일일 신규 및 누적 확진자 현황 (명, 확진(보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누적 확진자) 16,000 12,000 11,426 서울지역 8,000 확진자 현황 100 4,000 인천지역 일일 신규 및 누적 확진자 현황 (명, 확진(보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누적 확진자) 200 8,000 -----신규확진자 150 6,000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100 4,000 1,737 6.8 6.18 6.28 7.8 7.18 7.28 8.7 8.17 8.27 9.6 9.16 9.26 10.6 10.16 10.26 11.5 11.15 11.25 12.5 경기지역 일일 신규 및 누적 확진자 현황 (명, 확진(보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누적 확진자) 12,000 300 경기지역 9,134 확진자 현황 4.0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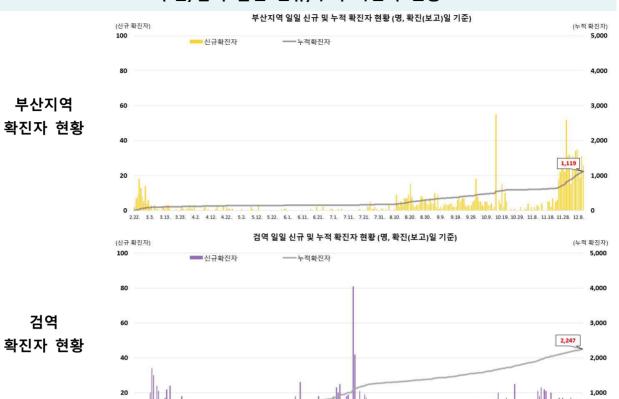








###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11. 0시 기준, 40,786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7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689	(100)	40,786	(100)	78.67				
 성별	남성	336	(48.77)	19,593	(48.04)	75.76				
O Z	여성	353	(51.23)	21,193	(51.96)	81.56				
	80세 이상	55	(7.98)	1,786	(4.38)	94.04				
	70-79	63	(9.14)	3,162	(7.75)	87.66				
	60-69	102	(14.80)	6,237	(15.29)	98.31				
	50-59	123	(17.85)	7,445	(18.25)	85.90				
연령	40-49	102	(14.80)	5,714	(14.01)	68.11				
	30-39	82	(11.90)	5,277	(12.94)	74.90				
	20-29	83	(12.05)	7,395	(18.13)	108.65				
	10-19	44	(6.39)	2,512	(6.16)	50.85				
	0-9	35	(5.08)	1,258	(3.08)	30.32				

<sup>\*</sup>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11.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8	(100)	572	(100)	1.40		
 성별	남성	3	(37.50)	292	(51.05)	1.49		
02	여성	5	(62.50)	280	(48.95)	1.32		
	80세 이상	4	(50.00)	294	(51.40)	16.46		
	70-79	1	(12.50)	178	(31.12)	5.63		
	60-69	3	(37.50)	68	(11.89)	1.09		
	50-59	0	(0.00)	25	(4.37)	0.34		
연령	40-49	0	(0.00)	5	(0.87)	0.09		
	30-39	0	(0.00)	2	(0.35)	0.04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sup>\*</sup>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sup>※</sup>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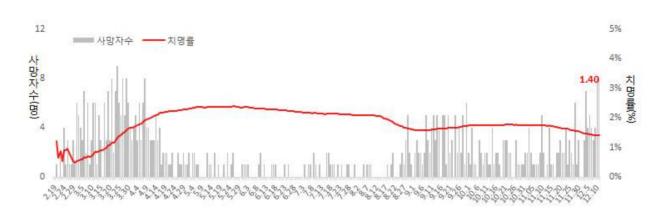




<sup>※</sup>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 일별 사망자 현황 >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12.11.

계 78 76 76 97 101 117 116 121 125 126 134 149 172 169

구분	위중증	(	%	)	
계	169	(	100.0	)	
80세 이상	35	(	20.7	)	
70-79세	68	(	40.2	)	
60-69세	38	(	22.5	)	
50-59세	24	(	14.2	)	
40-49세	3	(	1.8	)	
30-39세	1	(	0.6	)	
20-29세	0	(	0.0	)	
10-19세	0	(	0.0	)	
0-9세	0	(	0.0	)	

<sup>\*</sup>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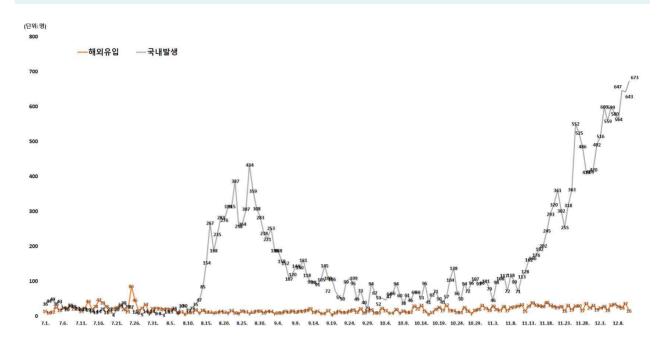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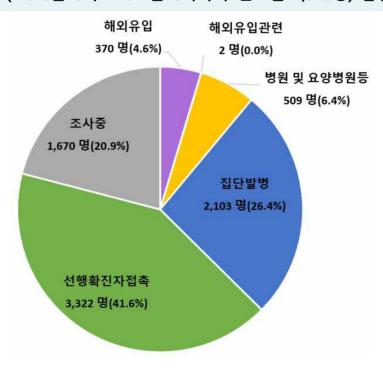


# **5 감염경로**

###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 최근 2주간 (11.28일 0시~12.11일 0시까지 신고된 7,976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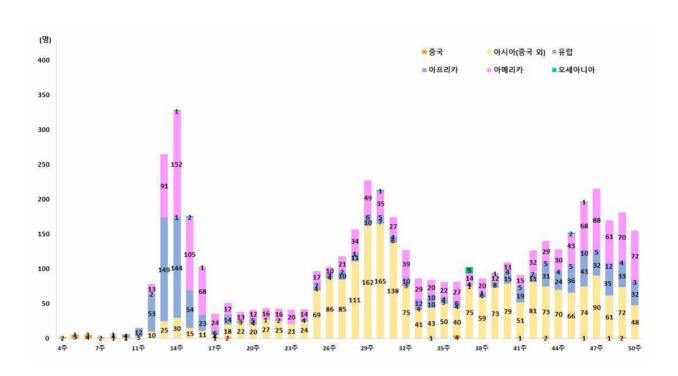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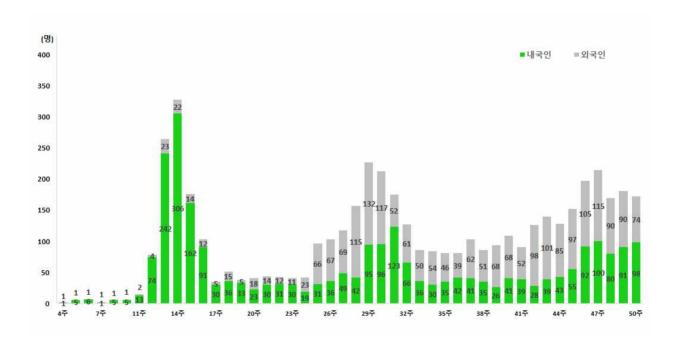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T 1812	20			
				확진환지		병, %)				
지역	누계	해외 유입	소계	<b>집단발</b> 신천지 관련	<b>생 관련</b>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서울	11,426	574	5,488	8	5,400	80	3,126	2,238	252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부산	1,119	76	749	12	682	55	168	126	26	* 서울 646명, 경기 33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대구	7,286	101	5,470	4,512	951	7	948	767	6	• <b>클럽 관련(277명)</b>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인천	1,737	142	1,013	2	1,002	9	355	227	37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광주	776	86	571	9	556	6	64	55	3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대전	592	41	337	2	334	1	142	72	10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울산	398	57	279	16	259	4	37	25	47	• 당구당군인에모임 선언(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b>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b>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세종	123	22	68	1	66	1	20	13	0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9,134	959	4,319	29	4,222	68	2,472	1,384	229	<ul> <li>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01명)</li> <li>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li> <li>* 서울 52명, 경기 23명, 인천 15명 등</li> </ul>
강원	753	40	519	17	501	1	114	80	11	• <b>서울 동대문구 병원 관련(45명)</b> * 서울 45명
충북	498	62	201	6	188	7	151	84	20	<ul> <li>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04명)</li> <li>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34명)</li> <li>* 서울 34명</li> </ul>
충남	1,044	95	575	0	574	1	237	137	10	* 시물 여행 • <b>인천 부평구 요양원 관련(27명)</b> * 인천 27명
전북	483	62	296	1	294	1	82	43	7	• 경기도 연천군 군부대 관련(93명) * 경기 92명, 서울 1명
전남	465	53	325	1	322	2	56	31	4	<ul> <li>경기도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40명)</li> <li>경기 27명, 대전 13명</li> <li>경기도 군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26명)</li> </ul>
경북	1,797	94	1,319	565	754	0	224	160	3	• 경기 고양시 요양원 I 관련(43명) * 경기 40명
경남	801	103	538	32	503	3	93	67	12	<ul> <li>경기 고양시 요양원Ⅱ 관련(24명)</li> <li>경기 22명</li> <li>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64명)</li> </ul>
제주	107	28	31	0	30	1	30	18	5	* 경기 63명  • 대전 유성구 주점 관련(63명)  * 대전 63명
검역	2,247	2,247	0	0	0	0	0	0	7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충남 47명, 세종 6명, 대전 1명 등
합계	40,786	4,842	22,098	5,213	16,638	247	8,319	5,527	689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02명)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157명) * 울산 156명, 경북 1명
답게	(%)	(11.9)	(54.2)	(12.8)	(40.8)	(0.6)	(20.4)	(13.6)	009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4명) * 경남 34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붙임 2

#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 누적발생 5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7 4	누적 빌	날생	신규	발생	치명률	<sup>&lt; 건 귀.</sup> 경 <sup>&gt;</sup> <b>인구10만명당</b>
구분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발생자 수 <sup>*</sup>
미국	14,972,356	283,994	216,360	2,552	1.90	4,549.49
인도	9,767,371	141,772	31,521	412	1.45	713.62
브라질	6,674,999	178,159	51,088	842	2.67	3,142.65
러시아	2,541,199	44,718	26,190	559	1.76	1,765.95
프랑스	2,269,668	55,986	13,713	828	2.47	3,465.14
이탈리아	1,757,394	61,240	14,837	634	3.48	2,968.57
영국	1,750,245	62,033	12,281	599	3.54	2,612.31
스페인**	1,702,328	46,646	_	_	2.74	3,668.81
아르헨티나	1,469,919	40,009	3,610	121	2.72	3,259.24
콜롬비아	1,384,610	38,158	7,510	163	2.76	2,780.34
독일	1,218,524	19,932	20,815	590	1.64	1,478.79
멕시코	1,193,255	110,874	11,006	800	9.29	901.93
폴란드	1,076,180	20,592	8,310	411	1.91	2,832.05
이란	1,072,620	51,212	10,223	295	4.77	1,295.43
페루	976,621	36,401	1,505	77	3.73	2,968.45
터키***	872,093	15,314	33,198	211	1.76	1,050.71
우크라이나	845,343	14,204	12,585	276	1.68	1,930.01
남아프리카공화국	821,889	22,432	4,011	183	2.73	1,414.61
벨기에	594,572	17,507	3	10	2.94	5,125.62
인도네시아	592,900	18,171	6,058	171	3.06	220.00
이라크	569,873	12,501	1,735	24	2.19	1,410.58
네덜란드	569,747	9,762	6,139	71	1.71	3,331.85
칠레	564,778	15,690	1,244	10	2.78	3,015.37
체코	556,927	9,136	5,857	100	1.64	5,254.03
스웨덴	297,732	7,200	3,319	2	2.42	2,947.84
카자흐스탄**	180,777	2,542	_	_	1.41	971.92
일본	168,573	2,465	2,733	45	1.46	132.84
중국	86,688	4,634	15	0	5.35	6.10
우즈베키스탄	76,265	393	959	5	0.52	234.66
키르기스스탄	76,012	1,303	322	2	1.71	1,226.00
말레이시아	74,352	611	146	0	0.82	226.68
싱가포르	58,291	29	6	0	0.05	987.98
호주	27,993	908	6	0	3.24	111.53
태국	4,151	60	25	0	1.45	5.99
베트남	1,381	35	4	0	2.53	1.42
대한민국	40,786	572	673	8	1.40	78.67

-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WHO에서 집계방식 변경(과거 터키 보건부에서 보고한 유증상 확진자수 토대로 집계하였으나, 11.27.부터 무증상 확진자를 포함하여 집계)









# 붙임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 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 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m²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ul> <li>▶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li> <li>▶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li> <li>-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li> <li>-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ul> <li>▶ 집합금지</li> <li>★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li> <li>▶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li> </ul>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b>시설 면적 16m'당 1명으로 인원 제한</b>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ul><li>▶ 좌석 두 칸 띄우기</li><li>▶ 음식 섭취 금지</li></ul>
PC방	<ul>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li> </ul>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ul>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ul><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li>▶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li></ul>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 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 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 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붙임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 트라이크아웃제'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 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HL 🗆 TILDII 🗲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ㅋㅂ근메 <del>ᆼ</del> 포근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포네인답(S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스탠딩공연장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N-1) = O = ()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7706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b>좌석 한 칸 띄우기</b> ▶ <b>음식 섭취 금지</b>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PC방	▶ <b>좌석 한 칸 띄우기</b>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교습소·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직업훈련기관	② 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del>중</del> 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	▶ <b>좌석 한 칸 띄우기</b>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300m² 이상)	1— 10, 2 1— 1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 (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붙임 5

#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관계부처에서 취합한 시설 개소수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 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	디사 11억		개소수		비고
분	대상 시설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اعت
	합 계	1,305,668	591,765	713,903	
중점	관리시설	931,348	415,747	515,601	
	유흥시설 5종	39,458	15,101	24,357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 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29,618	15,729	13,889	
	실내 스탠딩공연장	144	95	4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818	4,417	5,401	
	식당, 카페	852,310	380,405	471,90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 과점영업 등
일반	관리시설	374,320	176,018	198,302	
	실내체육시설	56,855	28,560	28,295	실외체육시설 포함
	PC방, 오락실	9,529	4,111	5,418	
	결혼식장	985	271	714	
	장례식장	1,204	412	792	장례식장, 봉안시설, 화장장
	학원	125,940	63,065	62,875	교습소 포함
	목욕탕·사우나	6,762	2,023	4,739	목욕장업
	공연장	1,062	553	509	
	영화관	569	267	302	
	놀이공원	2,713	1,174	1,539	
	워터파크	109	44	65	
	멀티방	609	343	266	DVD방 개소수
	이·미용업	167,681	75,024	92,657	이용업, 미용업
	백화점	302	171	131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의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되고 1단계, 1.5단계,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이 동일함

# □ 다중이용시설(2.5단계 적용 시 영업이 제한되는 시설)

	수도권	비수도권
총계	59만 2천개	71만 4천개
집합 금지	12만 9천개	13만 5천개
운영 제한 (영업시간/인원제한)	46만 3천개	57만 9천개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제외









# 붙임 6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워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 · 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 · 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갂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첚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 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 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